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9. 3.(금) 10:00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24호
-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36조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노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나. 노인교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내용(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제3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8. 24. ~ 8. 30.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금천구 노인교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노인교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함.

2) 노인교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교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3) 지원내용(안 제4조)

노인교실의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검토의견

-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건강 등 노인여가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임.
- 본 조례안은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